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과 지도·감독 권한 명시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02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명시	2
----------------------------------	---

2.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무원 의제	8
-------------------------------------	---

※ 참고자료

1. 현행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관	11
--------------------------	----

2.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임원 구성	1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육환경보호위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위원의 임원 임명·임기·결격사유·해임 및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교육환경보호위원의 임원) ① 교육환경보호위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이 아닌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원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교육환경보호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교육환경보호원의 이사회)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¹⁾.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 임원 및 직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의 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²⁾.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개정안은 현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임원 임명, 임기, 결격사유, 해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 교육환경보호원 정관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나, 정관에서는 임명직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정안 및 현행 정관 비교 >

구분		개정안 내용	현행 정관
임원	구성	■ 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	■ (좌 동)
	임명	■ 원장·감사는 임추위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 ■ 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	■ (좌 동) ■ 임명직 이사는 <u>임추위 추천 거쳐</u> 교육부장관이 임명 ※ 당연직 : 교육부 담당국장 및 시도교육청 국장(교육감 추천)
	임기	■ 원장 3년, 감사 2년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함	■ (좌 동) ■ 임명직 이사는 2년 ※ 당연직 :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구분		개정안 내용	현행 정관
	퇴직 및 해임	■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 교육부장관이 해임	■ (좌 동) ■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
이사회	구성	■ 이사회를 두며, 원장 및 이사로 구성	■ (좌 동)
	의장 및 소집	■ 원장은 의장이 되며 의사회를 소집함	■ (좌 동)

□ 기존 정관도 변경 시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통제수단이 존재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임원과 이사회 관련 규정 변경이 어렵게 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부터 자율 경영공시 현황과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를 알리오(ALIO)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³⁾, 법률에 임원·이사회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도와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기존 정관과 달리 이사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원장과 감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여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 공석 발생 시 충원

3)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도 공공기관 총 342개 지정, 미지정기관도 경영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 '26.1.29.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력 영입과 교체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유사 사례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경우에도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⁴⁾, 이사장·감사와 이사 간 임명 절차에 차이를 두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이사회의 원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추천하여 임원 인사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였음에도,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교육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재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또한 원장을 포함한 최대 16인의 임원 중 원장과 감사 2인에 대해서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치고 나머지 14인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취지 및 기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임원)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2.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무원 의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4(교육환경보호원의 지도·감독) ① 교육환경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환경보호원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환경보호원에 정관의 변경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예결산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① 교육환경보호원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 ②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 사실에 대한 정관 변경 명령 또는 시정명령, ③ 「형법」 제129조 ~ 제132조까지의 규정5)(수뢰죄 등)의 벌칙 적용 시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임.

< 개정안 및 현행 정관 비교 >

구분		개정안 내용	현행 정관
지도·감독	예결산	■ 교육부장관에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 보고	■ 교육부장관에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 보고하고 <u>교육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u>
	검사	■ <u>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업무·회계·재산에 관련 검사</u>	■ (규정 없음)
	시정명령	■ <u>교육부장관이 정관변경 및 시정명령 등 조치</u>	■ (규정 없음)
벌칙		■ <u>형법 제129조 ~ 제132조 적용 시 임직원 공무원 의제</u>	■ (규정 없음)

□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에 대한 현장 출입 및 조사 지원,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학교 주변 유해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있는 기관임.

- 이와 같은 교육환경보호원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임직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부패행위나 이해충돌을 예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는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해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교육환경보호원 임직원에 대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4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보호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호원의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021.12.29.>
2.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7조(원장) ①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02.14., 2026.03.10.>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4.02.14.>

③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시까지 후임원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후임원장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4.12.>

⑤ 원장의 사고 또는 결원 시 직무대행은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9.10.>

제8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직위에 있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4.02.14., 2026.03.10.>

1. 교육부 담당국장
2.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5인 이상)
3. 원장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2.14.>

③ 이사의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2.14.>

제9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1.04.12., 2024.02.14., 2026.03.10.>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감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04.12., 2024.02.14.>

③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6) 2026.3.10. 개정

1. 보호원의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

2. 보호원의 회계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2.>

⑤ 감사는 보호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임기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 이사회는 지체없이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12.>

⑦ 제6항에 따른 사유로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04.12.>

제10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그 임원을 해임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03.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보호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 보호원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 의 구성 등) ① 보호원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 의 운영)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 산 및 회 계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보호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그 회계연도의 개시 전까지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6.03.10.>

② 보호원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한다.<신설 2021.01.05.>

참 고 2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임원 구성 ('26.2. 기준)ⁱ

직위	성명	상근여부	직위	임기
원장	조00	상근	(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3년 (임기 종료 / 후임 선임시 까지 근무)
이사	심00	비상근(당연직)	(현)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재임기간
이사	정00	비상근(당연직)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백00	비상근(당연직)	(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손00	비상근(당연직)	(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고00	비상근(당연직)	(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재임기간
이사	김00	비상근(당연직)	(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재임기간
이사	최00	비상근(당연직)	(현)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재임기간
이사	김00	비상근(당연직)	(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윤00	비상근(당연직)	(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이00	비상근(당연직)	(현)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재임기간
이사	김00	비상근(선임직)	(현) (사)좋은교육협의회 이사	2년
이사	김00	비상근(선임직)	(현) 법률사무소 율친 변호사	2년
이사	박00	비상근(선임직)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년
이사	윤00	비상근(선임직)	(현) 청주대학교 교수	2년
감사	강00	비상근(선임직)	(현)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2년

7) 자료: 교육부